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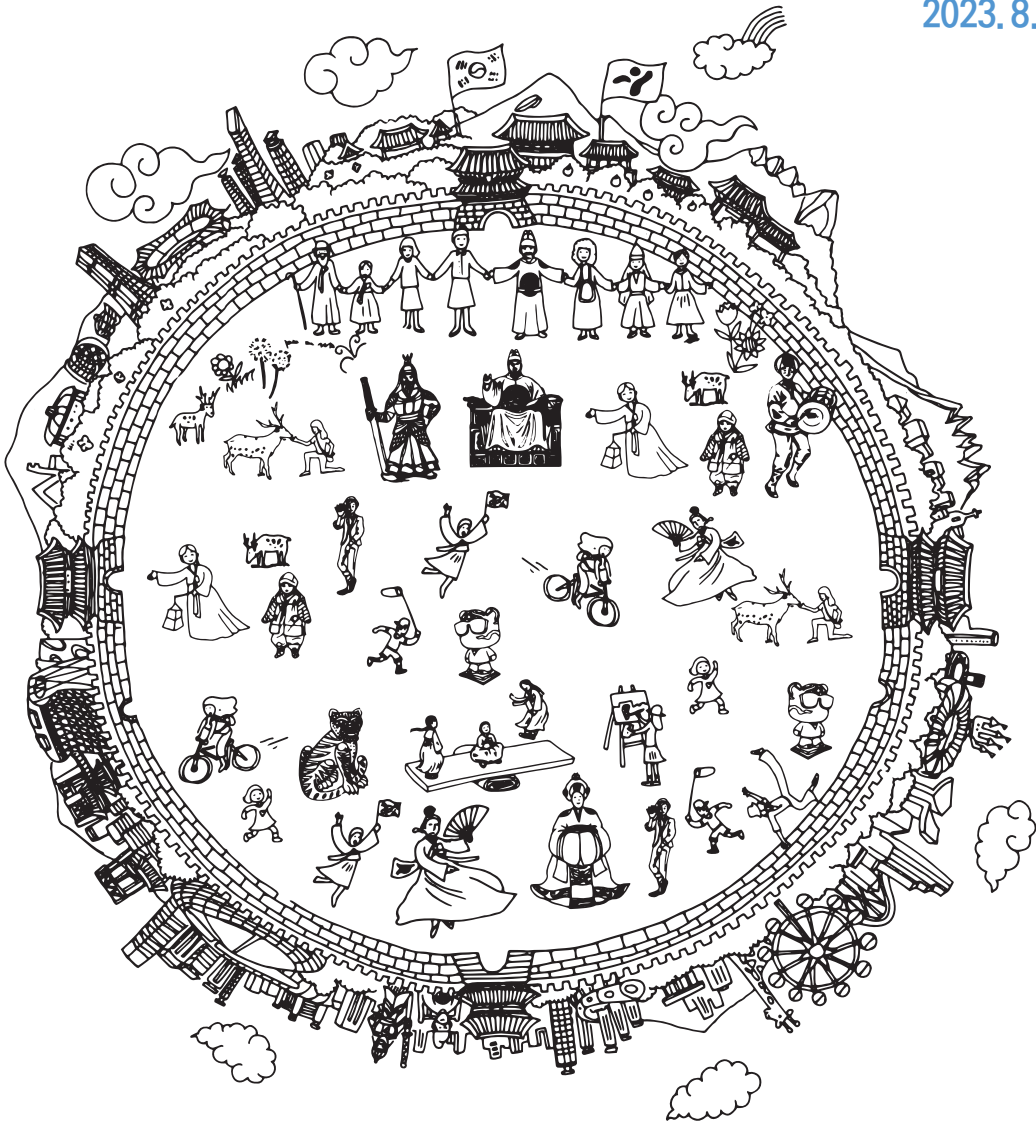
동행·매력
특별시 서울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3898호
2023. 8. 14.(월)



목 차

◆ 자치법규 등

[조 례]

제886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2

◆ 공 고

제2023 - 2367호 서울특별시의회 제출안건 추가 공고 3

자치법규 등**[조 례]****◆ 서울특별시조례 제8864호****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**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」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회의의장 김현기 인

2023년 8월 14일

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>**1. 제안이유**

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은 학교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를 별도 조례로 둘 실익이 적고,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을 교육하기 위해 환경교육 관련 시행계획이 아닌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되는바 동 조례의 폐지를 제안함.

2. 주요내용

가.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함.

공 고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-2367호

서울특별시의회 제출안건 추가 공고

지방자치법 제55조(제출안건의 공고)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8월 14일
서울특별시장

구분	연번	제출 안건명	실본부국
동의안(1건)	1	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	인재개발원 (인재기획과)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